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

[제정 2025.06.24.]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경기테크노파크(이하 “법인”라 한다)의 부패방지경영 방침 수립·달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관리·실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용어는 ISO 37001 표준의 정의에 따른다.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란 부패방지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자원·기능 등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업무활동의 집합을 말한다.
2. “부패”란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 위반, 이해충돌, 회계분야 위반을 말한다.
3. “부패리스크 평가”란 부패리스크 식별,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총체적 업무활동을 말한다.
4. “위원회”는 법인의 경영활동 중 부패방지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부패방지준수책임자”란 법인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ISO 37001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하고, 부패 이슈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성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부패방지경영 주관부서”란 재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직무관련자, 지역주민, 고객 등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직무관련자”란 법인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제4조(운영) ① 원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준수책임자(이하 “준수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부패방지경영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라 한다)을 관리·감독한다.

③ 준수책임자와 주관부서장은 동일한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 및 관리한다.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활동 계획
2. 중대한 부패리스크와 연관된 임직원 및 조직에 대한 실사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및 부패발생 시 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통보하는 일련의 조치
4. 부패로 간주될 수 있는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5조(부패방지 방침) ①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원장의 검토 후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② 준수책임자는 임직원에게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방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부패방지 방침을 제공한다.
③ 부패방지 방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패방지 목표) ①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부패방지경영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적용대상
2. 요구되는 자원(인원, 예산 등)
3. 관리책임자
4. 목표달성 시기 및 실행방안
5.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방법
②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 목표 및 추진계획을 실행한 후 결과를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부패리스크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부패관련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부패리스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부패리스크를 평가한다.
1. 식별된 부패리스크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관리 우선순위 결정
2. 식별된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직의 관리방안 수립
3. 관리방안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제8조(실행의지)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 및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부패방지 방침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② 원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고, 부패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제공
2. 부패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 운영
3.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보상 및 징계제도 운영
4. 부패 발생 시 자문 및 신고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제공
5. 부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6.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 유지

제9조(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원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인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10조(인식,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① 주관부서장은 법인 내 부패방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수립 및 평가 후 업무에 투입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임직원이 부패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부패방지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제11조(부패방지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부패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계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재무적인 측면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조달, 운영, 인적자원 및 법규규제 활동과 같은 분야와 관련된 부패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절차와 기준을 수립·운영하는 등 비재무적인 측면을 관리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부패리스크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확인된 업무와 연관된 임직원, 직무관련자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자에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기존의 부패방지 관리수단으로 직무관련자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파악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계약을 가능한 한 빠르게 종결한다.

제3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검토, 성과관리 및 개선

제12조(성과관리 및 내부심사)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부패방지 성과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효율성 평가
2. 매년 1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

제13조(경영검토) ① 위원회는 준수책임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검토 후 승인한다.

②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검토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매년 1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14조(개선) 주관부서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부적합 시정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토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위한 지속적 개선 조치

제15조(위임사항) 주관부서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6조(기타)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매뉴얼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적용범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적용범위

1. 적용조직 : 경기테크노파크의 모든 조직

2. 대상업무 :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

3. 적용표준 : KSA ISO 37001:2025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4. 적용사업장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디지털전환허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
   - 그 외 경기TP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소

[별표 2] 부패방지 방침

부패방지 방침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법인의 미션과 “기업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윤리실천 공공기관”이라는 윤리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 「(재)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하나, 우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경영시스템 운영의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본 방침의 위반 및 행동강령의 위반 또는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내외부 이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리스크 평가를 통해 요인 제거를 위한 관리 목표에 반영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부패방지경영방침을 임직원과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전사적인 경영시스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 06월 30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